

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

[2012. 5. 18]
조례 제422호

일부개정 2014. 11. 21 조례 제553호

(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)

일부개정 2015. 1. 1 조례 제564호

일부개정 2015. 11. 20 조례 제641호

전부개정 2017. 12. 15 조례 제788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증평군 귀농의 활성화 및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귀농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용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일 것
2. 증평군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
3.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일 것

제3조(귀농인의 지원) ① 증평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법 제7조에 따라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하거나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귀농인 정착자금의 지원
2. 귀농에 관한 정보 제공
3. 농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
4.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·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4조(교육훈련의 지원)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 과정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귀농인의 교육훈련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증평균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

제5조(관리대장의 작성) 군수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기록하고, 변동사항을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(2017. 12. 15 조례 제788호 전부개정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